

김웅 / 6월 / 실전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8865	19.5	9.5	19.5	10	58.5	1	2.04%	49
563809	17.5	10.5	18.5	11.5	58	2	4.08%	
551657	16.5	7.5	19.5	13.5	57	3	6.12%	
563853	18.5	10.5	17	11	57	3	6.12%	
564088	17.5	10	18.5	11	57	3	6.12%	
565222	16.5	9	18.5	12.5	56.5	6	12.24%	
564172	16	11.5	17.5	10.5	55.5	7	14.29%	
565424	16.5	11	17.5	10.5	55.5	7	14.29%	
564278	17	11	15.5	11.5	55	9	18.37%	
564309	17	10	17.5	10	54.5	10	20.41%	
556213	16.5	10	16	10.5	53	11	22.45%	
564212	16	9	17.5	10.5	53	11	22.45%	
565475	17	9	17	10	53	11	22.45%	
564929	15.5	8.5	18.5	10	52.5	14	28.57%	
563876	15	8.5	17	11.5	52	15	30.61%	
564854	15	11	17	8.5	51.5	16	32.65%	
564533	14.5	9	15.5	12	51	17	34.69%	
556205	17	9.5	13	11	50.5	18	36.73%	
563814	14	9	17.5	9.5	50	19	38.78%	
563883	14.5	7	18	10.5	50	19	38.78%	
565306	15.5	8	15	11.5	50	19	38.78%	
563829	13	9	17.5	10.5	50	19	38.78%	
556214	16.5	8	14	11	49.5	23	46.94%	
564239	14.5	10	16	9	49.5	23	46.94%	
565251	13.5	9	16	11	49.5	23	46.94%	
564001	14	10	14	11	49	26	53.06%	
548652	14.5	8	14.5	11	48	27	55.10%	
564048	14	8	16	10	48	27	55.10%	
564842	16.5	9	14.5	8	48	27	55.10%	
565168	16	8.5	14.5	9	48	27	55.10%	
563855	15	9.5	16	7	47.5	31	63.27%	
556408	12	9.5	14	11.5	47	32	65.31%	
562174	13.5	9	13	11.5	47	32	65.31%	
556416	13.5	9.5	15	9	47	32	65.31%	
565520	14	8.5	13.5	11	47	32	65.31%	
556305	16.5	7.5	14	8.5	46.5	36	73.47%	
563821	13	7.5	15	11	46.5	36	73.47%	
564159	12.5	7	15.5	11.5	46.5	36	73.47%	
564708	15	8	13.5	10	46.5	36	73.47%	
564571	13	8.5	13.5	10	45	40	81.63%	
564184	15	9.5	12	8	44.5	41	83.67%	
563919	16	7	11.5	9	43.5	42	85.71%	
563820	14.5	9.5	9	10	43	43	87.76%	
564577	14.5	8	11	8.5	42	44	89.80%	
563824	13.5	8	7.5	7.5	36.5	45	91.84%	
563872	12.5	8.5	15	0	36	46	93.88%	
564026	9.5	7.5	10.5	8.5	36	46	93.88%	
563800	9.5	7	12.5	6.5	35.5	48	97.96%	
563878	11	8	10.5	6	35.5	48	97.96%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5회/1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비밀디자인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갑의 비밀디자인청구의 적절 여부와 디자인 B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각각 목차를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적절 여부에 대하여는 대부분 비밀디자인청구의 요건과 사안의 경우에 대하여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법적 취급에 대하여는 일반론만을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디자인B에 대하여 물었으므로 간단히라도 사안 적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시행령을 작성 안 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정확히 시행령 몇 조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p>실질적 사항으로써 물품 및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설문 (1)을 전제로 문제 되는 거절 이유를 검토하여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주의에 대하여 누락 없이 잘 검토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 **3. 소결**

문제-1의 경우 대부분 논점 이탈 없이 무난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 설문 (1)에서 사안 적용을 잘 작성했거나 설문 (2)에서 서지적 사항과 실질적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분의 답안이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5회/2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우선심사신청, 보정, 출원공개, 분할출원 등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등록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하여 심사 절차에 관하여 관련 조문과 함께 작성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p> <p>우선 심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용 의류를 이미 제작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우선심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출원 후 디자인의 변경이 요지 변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요지 변경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등록 전의 출원공개 유형으로써 제52조와 56조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제56조의 경우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출원공개 유형으로써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p>(4) 설문 4</p> <p>모범답안과 달리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고 작성한 경우에도 근거가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 **3. 소결**

각 설문의 배점이 5점에 불과하므로 한 설문당 너무 많은 시간과 분량을 쓰지 말고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조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과목의 조문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조문을 모두 암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전에서 중요 조문의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5회/3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보정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적법한 보정 요건에 대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요건 등에 대하여 모두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일반론 문제의 경우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금방 작성하고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물품 보정에 관한 심사 기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착오나 오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마찬가지로, 투명한 특징이 최초 도면에 의해 추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4) 설문 4</p> <p>마찬가지로 도면 형식의 변경이 물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 **(5) 설문 5**

수직 절개 단면도와 사용 상태도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수직 절개 단면도의 경우 최초 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디자인의 설명에 충분히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요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사용 상태도의 경우 디자인 이해를 위한 용도이므로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 **3. 소결**

논점이 비교적 명확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논점 이탈이나 누락 없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5회/4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경고장을 받은 자의 조치, 비침해 항변 등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답변서 발송,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하여 골고루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답안에 없는 실시 중단, 실시권 설정, 화해, 조정 등의 조치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조치 문제의 경우 다각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문제를 푼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의 자유실시디자인 범리에 대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받아들여짐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작성한 분이 몇몇 계셨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p> <p>(3) 설문 3</p> <p>대부분 관련 판례와 함께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무효 심결 확정의 소급효에 대하여 관련 조문과 함께 작성한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 **3. 소결**

실전 GS 5회차도 작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차 GS에 나온 논점, 누락하거나 이탈한 논점 등은 각자 기본서에 단권화하여 시험 직전까지 회독할 수 있는 기본서를 슬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 문제 ]
I.	실문(1)
1.	법적근거
(1)	<p>비밀디자인 - &gt; 43조</p> <p>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디자인권 설정 응징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p>
(2)	<p><u>구체적 요건</u></p> <p>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청구 가능하고 공천 정지에는 공과라 각각 청구 가능하다.</p>
(3)	<p><u>시제적 요건</u></p>
1)	디자인 등록을 출원한 날부터 최초로 디자인 등록으로 내는 날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단락, 연광 할 수 있다.
(4)	<p><u>객체적 요건</u></p> <p>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고 우선 디자인 등록 출원인 정지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 가능하다.</p>
(5)	<p><u>절차적 요건</u></p>
1)	출원인은 출원서 청구하는 정지에는 그 취지를 기재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정지에는

비밀디자인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필수사항으로 본다.

## 2. 특허 비밀디자인 청구 적절 여부

- ① 특허 디자인 비 출원인으로서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고 ② 등록시 필요한 등록료 납부 전인  
2026.4.2에 청구를 하여 시기적 요건도 만족  
하며 기간은 12개월로 한바 이 점을 만족  
한다. ③ 본인이 출원디자인에 출원료 각  
체적 요건도 만족하며 ④ 비밀디자인 청서를 제  
출하였으므로 절차적요건도 만족한다. ⑤ 또한  
유사한 디자인 A의 판매로 인한 공익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비밀디자인 청구는 적절하다.

## 3. 디자인 비 법적 취급.

### (1) 비공개

- ① 비밀디자인 청구가 외국인 실질적 사람에게 대해 비공  
개처리가 되므로 ② 디자인은 등록 후 12개월  
동안 비공개된다.

### (2) 인용디자인 지적 관련

비밀디자인 청구는 공익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규성·창작성·비공개성 판단대상이 항속성과 선출권  
확대형 선출권 적용시에는 심사요구를 투기한다.

(3) 열람청구 제한

비밀디자인의 경우 통계를 받거나, 심사 심판 위  
양자나 출가인, 경을 받은 사실을 소명한다,  
발된 오는 실정이 아닌 열람이 제한된다.

(4) 이수신청기간 실질적 연장

실질적 사가 계재<sup>한</sup> 이수 신청이 3개월간 가능  
카트 이수 신청기간에 실질<sup>적</sup>으로 연장<sup>되</sup>다.

(5) 과실의 책임 해제 - 제113조 단서

비밀디자인 신청자 디자인을 출재<sup>한</sup> 출재<sup>한</sup> 출재<sup>한</sup>에게는 과실<sup>의</sup>  
책임이 적용<sup>되</sup>지 않는다.

(6) 출재금지청구 제한 - 제113조 2항

비밀디자인출재의 디자인을 가지고 출재금지 청구를 행  
사 하는 경우에는 공명<sup>을</sup> 받은 사실<sup>의</sup> 제사<sup>가</sup> 필요  
하다.

(7) 비밀누설죄 - 제225조

① 비밀<sup>을</sup> 누설<sup>한</sup> 지사<sup>개</sup>사<sup>한</sup> 자는 2년<sup>이하</sup> 징역  
또는 5천<sup>만원</sup> 이하 벌금<sup>에</sup> 처단<sup>되</sup>다.

② 열람<sup>권</sup>자<sup>가</sup> 누설<sup>시</sup>에는 2년<sup>이하</sup> 징역 또는 5천<sup>만원</sup>  
이하 벌금<sup>에</sup> 처단<sup>되</sup>다.

(8) 비밀 캐시

비밀디자인 창작권이 만료되면 200대 실질적 사항  
이 공개된다.

## 3.5 3.5.1. 2.5

### 1. 유통권자 - 비밀디자인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적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시 디자인 공보에 게재가 되고 실질적 사항  
인 물품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설명,  
도면 등은 비밀디자인 기간이 만료될 이후에 디자  
인 공보에 게재된다.

### 2. 사안

#### (1) 2026. 7. 2 이후

13의 디자인에 관한 사적 사항이 디자인 공보  
에 게재된다.

#### (2) 2027. 7. 2 이후

무엇이 신청한 비밀디자인 기간인 12개월 이후인 2027.  
7. 2에 디자인 B에 관한 도면, 디자인 설명, 물  
품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등 실질적 사항이  
공보에 게재된다.

Ⅲ

실문(3)

번적근거

(1)

신작성 - 제 33조 1항

공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규정이다.

(2)

창작비동작성 - 제 33조 2항

공제된 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인이 쉽게 창작  
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할 수 없다.

(3)

선출권주체 - 제 46조

출원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에 2이상 출원시  
별지 출원된 디자인 역시 등록이 가능하다.

2.

실문의 해설

(1)

디자인 보호의 관계

1)

신작성, 창작비동작성 출원 여부

디자인 또는 비밀디자인 청구된 디자인으로 공제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디자인 또는 본질의 거절처는  
없다.

2)

선출권 주체 출원 여부

디자인 또는 디자인 (와 유사하고 따라서 디  
진 또는 선출권 주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  
자인 또는 비밀디자인 청구된 디자인이라 실사등록

특기를 하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12개월  
이후에 거절될 것이다.

12) 디자인 A와 C의 관계

① 사실상 디자인 A와 C가 유사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디자인 A는 디자인 B와 유사하므로 여지가 있을 수  
있다.

② 따라서 만약 디자인 A와 C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불충족이고, 용이창작성이 가능하다면 창작성불충족  
결론이 될 것이다.

3. 결론

디자인 C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 [문제2]

## 1. 심문(1)

## 1. 법적근거

## (1) 심사청구 후종재

특허와 달리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고 출원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한다.

## (2) 우선심사 신청 - 절차

## 1) 객체적 요건

특수성이 평가 가능하다.

## 2) 객체적 요건

① 출원 공개 후 출원이 변이가 양호시 심사 중인 것

② (특정성)으로 장치는 간접적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 3) 시기적 요건

우선심사 신청에 해당하면 심사청구 2개월 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2. 시간

① 출원 이후 등록까지는 순차적으로 심사 단계에 통

상적으로 (변경된) 시간에 걸친 것으로 예상된다.

다. ② 최대한 빠른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5

4. 실문(2)

1. 법칙근거

(1) 법령 - 제 48조

출원인은 외국인을 아니는 바에서 출장이 가능하다.

(2) 국제적 요건

출원인이 가능하다. 공동출원인 중 2자가 가능하다.

(2) 객체적 요건

1) 제 48조 2항

디자인 등록 출원을 관련디자인 출원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역도가능

2) 제 48조 3항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역도가능

3) 외국인성 제외

출원을 하지 않은 바에서 출장이 가능하다.

(4) 시기적 요건

디자인 등록의 결정 발령권, 재심사 청구권, 기결결정 불복심판 청구권 30일 이내, 소관에서 부결시 제출기관에 갈 수 있다.

3. 사안

출원 후에는 출장이 가능하다. 에원등을 부수디자인이 출원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아니라면 출장할 수 있음

9주  
2.5

1. 실용(3)

1. 법적근거

(1) 출원 공개 - 23523

출원인은 실정에 따라 등록 전에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제적 요건

출원인이 가능하며 공동출원인 및 전담이 가능하다.

(3) 적체적 요건

① 출원(디자인)에 대해서 가능하며 복수디자인 등록 출원인 및  
전담 또는 일특에도 가능하다.

② 심사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4) 시제적 요건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최초 디자인등록연속결정  
통일이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2. 사안

① 등록전에는 신청이 없는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방법이 원하신다면 등록회절에도 경고를  
해서 출원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2.5

Ⅳ 실문(4)

1. 특허권

(1) 출원 출원 - 첫 403

디자인출원비 2-14년 디자인이 포괄된 경우에 출원하여 출원이 가능하다.

(2) 요건

1) 출원 계속 증빙

출원출원비 추가에서는 원출원이 출원 계속 증빙이다.

2) 2-14년 디자인이 포괄된 것

① 2-14년 디자인이 포괄되어야 한다. ② 즉 1디자인 1출원은 (첫 403 명)을 포함하는 경우 ③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은 한 경우에 가능하다.

3) 동일성이 인정될 것

원출원비 기재되어 있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시간

애원항을 부여에서 무늬 디자인이 모자가 일체성을 가진다면 출원이 출원이나 다른 옷과 모자가 분리된 각각의 디자인 여태 1디자인 출원 가능으로 출원 출원이 가능합니다.



## [문제3]

I. 실문(1)

1. 보정 - 법 483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이 요지를 변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 등을 보정할 수 있다.

2. 객체적 요건

① 보정은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가능하다. ② 출원이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각자가 보정이 가능하다.

3. 객체적 요건

(1) 법 483 2항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을 안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역도 가능하다.

(2) 법 483 3항

디자인 발상상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실사등록출원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그 역도 가능하다.

(3) 의변경 제(제)

출원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정이 가능하여 동일성을 깨뜨는 경우 의변경으로 보아 보정이 불가능하다.

## 4. 시기적 요건

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불송결, 재심사 청구기간,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 즉 30일 이내, 심판에서 결정요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가능하다.

## 5. 불평 효과

- ① 불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을 한 디자인으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소권화가 된다.
- ② 요지 불평을 가과하고 착오 등록시 그 불평서를 제출할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6. 불결사 취급

- ① 불결기간 5과 후에 불결사 발생되고 ② 불결이 요지(불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25  
표 실문(2)

## 1. 요기 변경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보장하는 범위 물품의  
형질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요기변경에  
해당한다.

## 2. 요기 변경이 아닌 경우

단순한 기재의 차이, 물품명을 명확하게 라거나  
물품의 형질상 인정되는 범위 요기변경이 아니다.

## 3. 사안

지갑과 휴대폰 케이스는 물품의 형질상 범위를 넘  
어섰다고 판단된다. 이는 흔들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에는 힘들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은 도적변경이다.

### 3.5

Ⅱ 4단(3)

#### 1. 외기 변경의 경우

디자인 실용성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기대를  
 낳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외기 변경으로 본다.

#### 2. 외기 변경이 아닌 경우

디자인 실용성에 기재된 특성이나 명백한 고기를 수  
 정하는 경우에는 외기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3. 사안

① 물품의 일부가 특정하다는 취지에 실용적 취지의 경우  
 (디자인 상에 특정권 부여 쉽게 나타나 있어 수  
 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성에 이를 취지  
 는 것은 외기 변경이 아니다. ② 그러나 특정권 수  
 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  
 용적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외기 변경에 해당한다.

3.5쪽

IV 실문(4)

1. 외 변경의 경우

(가인 외청에 변칙을 가져와서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외 변경으로 본다.

2. 외 변경이 아닌 경우

안정한 음성의 차이를 가져올 뿐인 경우에는 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안

① 원래의 음성이 높음은 심도 향상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생각건대 안정한 음성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나 외 변경이 아니라 외청의 보정일 것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보정으로 외청의 변칙이 크다면 보정은 보정받지 않는다.



## 3 실문(3)

### 1. 권리 범위가 다른 경우

특허 출원시 도면으로 되어 영문과 도출될 수 있는 형태나 디자인의 도면을 추가하는 것은 권리 범위가 아니라 허용범위이다.

### 2. 권리 범위의 범위

출원시 포괄적이었고 특허 기재로 되어 도출할 수 있는 형태나 도면의 제출은 권리범위로 보아 보정이 불가능하다.

### 3. 사안

① 디자인 시 내용에 관한 권리 절차 변경할 때 영문과 도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없어 권리범위에 해당하여 보정이 불가능하다.

② 용도를 기재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상태도를 제출하는 것은 특허의 도면으로 용도가 파악가능하다면 관련된 보정에 해당한다.

## [문제 4]

## I. 실문(1)

1. 특 등극 디자인의 무효사유 검토(1) 신작성 검토

① 공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극을 할 수 없다. ② 실문상 특허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된 사실은 없다.

(2) 창작성 검토

① 공식 디자인과 극히 유사하여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은 등극이 불가능하다. ② 특허 등극 디자인은 사각통, 사각기둥, 일정한 폭 등의 형태를 결함한 것으로서 통상적 디자인이라면 쉽게 찾아 가능해 보인다. 본 문은 틀립니다.

2. 2차 취할 조치(1) 무효심판 - 취지

이해관계인은 공식상 추가 받은 디자인권은 소멸 시켜 추가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다.

(2) 이해관계인 취(제)

이해관계인이란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은 열제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정고를 받은 자도 이에 해당한다.

(3) 사안

2은 무크 특허 경고장을 받은 바 이해관계자가  
 인정된다.

3 결론

2은 이해관계자가 인정되고 무크 디자인에는 창작  
비용이성 출결이 있어 무크성평을 창작해 인용 실결은  
받아 소권소멸을 프르 한다.

4 (실문 2)

1. 변역문거

(1) 권리발기 규정 - 무크의 경우

① 공제디자인과 동일·기사한 실구성을 출결할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발기가 특정 한다. ② 그러나 창작  
 비용이성이 출결하는 경우 에는 권리발기가 특정 되지  
않는다.

(2) 자국실시 디자인 주장

공제 디자인 소속 이 유하게 창작 할 수 있는 디  
자 는 등록 디 자 인 과 대 비 할 것 도 없 어 권 리 발 기 에  
속 하 리 영 향 하 나.

(3) 소극적 권리 발기 확인 실패 - 23/223

이해관계인은 권리발기 판단의 권 한 확 인 을



위해 권리범이 확인심판이 가능하다.

2. 사안

(1) 적부

앞서 특허의 권리범이 ~~확인~~ 2는 청구항을 벗어나

· 권리관계가 인정된다.

(2) 불당

무니 이 사건은 권리확인의 사각통, 사각기능, 일괄

적인 모든 일체와 시켜 ~~확정~~ 불분명

므로 공짜로 권리 범위가 ~~확정~~ 불분명

이는 공개 ~~확정~~ 5년 실제 확정 가능한 가치

실시 이 사건에 귀속 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결론

인용심판이 나타난다.

3  
Ⅲ. 결론 (3)

1. 변질권거 - 확인서 이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불분명 권리 에 대해

권리범위를 확인 하는 제도로 소급 하여 소멸

의 범위 는 확인 의 이치 없이 특정

해결 하고 하였다.

2. 사안

1. 1차 청구항을 확장하여 2차 청구항이  
 3. 1차 청구항을 보완하여 2차 청구항을  
 보완하여 1차 청구항이 되어 1차 청구항의 이의  
 에 응고 따라서 1차 청구항이 특허법규에  
 부합하고 2차 청구항은 신규성이 있다.

3. 결론

각각 청구항은 신규성이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